

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

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 지정의 해제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이루어졌고, 위 공법상 제한은 위 사업의 시행과 전혀 관계없이 가하여진 경우,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그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되어야 한다.
(대법원 1991.06.27. 선고 90누2970 판결)
